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규정

□ 제 정 : 2017. 03. 01.

□ 개 정 : 2018. 04.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 확보 및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이 규정은 본교 대학 및 부속기관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모든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이하 “연구실” 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②교내 소재 외부연구기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의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정” 이라고 말한다.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부” 이라고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 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본교의 교직원, 연구원, 학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5.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 말한다.
6. “안전환경관리” 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환경사고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7. “외부연구기관” 이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교내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외부연구소, 외부기업 등을 말한다.
8. “안전점검” 이라 함은 자격이 있는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 이라함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률” 이라한다.)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연구실의 잠재적 위험요소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0. “안전보호구” 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로부터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개인안전장비를 말한다.
11. “연구실사고” 라 함은 연구실에서 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

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환경관리안전위원회

제4조(목적)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총장
 2. 부위원장: 환경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한다)
 3. 당연직 위원 : 교무입학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자연계열 대학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차(과)장, 환경관리차(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4. 연구활동종사자
-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 ③ 제1항 제4호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1인을 간사로 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 환경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5. 연구실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실안전환경 관리 및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사고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연구실사고 발생 시 위원회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후속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소집) ①위원장은 년 1회 이상 정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임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제9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조직과 직무

제10조(조직) ①총장은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환경을 위하여 환경안전관리부서(환경안전원)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1명을 전담자로 선임하고 연구실 안전 환경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총장은 각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실별 담당(지도)교수를 연구실 책임자를 “정” 으로 선임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부” 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 활동 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책임자 “정” 이 선임한다.

제12조(연구실책임자)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연구실 책임자는 법률 제5조의2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 업무를 보좌하고,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장 교육 및 안전점검

제14조(안전교육 및 훈련) ①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사용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행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수칙을 이행토록 지도하며,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는 법률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1년에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2년에 1회 실시하며, 연구실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연구실책임자 “정” 은 실험.실습실(연구실)의 시설,장비와 환경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총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험 개시 전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기타 안전점검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위험기기 및 위험물 취급

제16조(실험·실습기기 조작 및 운영)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습기기에 대하여 사용 전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실험·실습 기기의 조작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장비 안전관리) ①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시설 및 장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장비의 현황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화학물질 및 폐액관리) 연구실 책임자 “정” 은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연구실 책임자 “정” 은 화학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항목의 특성에 적합하게 관리 하여야한다.

②연구실 책임자 “정” 은 4류 위험물은 최소사용량을 실험실에 보관하고 잔여량은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연구실 책임자 “정” 은 실험폐액은 내용물의성상(性狀)별로 용기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폐액 처리 절차에 따라 폐액 중간보관소로 이송한다.

④연구실 책임자 “정” 은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연구실 책임자 “정” 은 기타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에 통보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기타 관리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연구실사고예방 및 보험

제19조(연구실 사고예방 조치) ①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긴급 대처방안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경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부”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부” 는 위험물 보관 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소에는 출입 제한 및 위험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연구실 책임자 “정” 은 독성가스 누출, 화재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연구실에는 가스누설경보장치 및 자동소화설비 등 제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부서에 요청하여 설치한다.

제20조(연구실 안전수칙) 연구실 책임자 “정” 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숙지 시켜야 한다

제21조(야간 연구실 사용) ①24시 이후 연구실 사용자는 “철야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장 또는 기관장을 통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1항의 승인사실을 해당 건물 경비근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③야간 연구실 사용 승인서를 서면 접수한 경비근무자는 순찰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야간 연구실험자는 경비근무자의 역할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실 사고조사 및 행정조치) ①연구실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는 사고현장 보존 및 주의, 경고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즉시 보고 또는 통보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관한 행정조치를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④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래과학창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건강검진 실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 가입)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관련 예산) ①본교는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예산의 계상과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6조(안전환경관리 기록 및 보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책임자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
2. 정기·특별·자체안전점검 자료
3. 안전교육·훈련 실시 자료
4. 상해보험 및 건강검진 실시 자료
5. 시약 및 위험물 현황 등 배치도 및 자료
6. 연구실사고보고서
7. 기타 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27조(세부 안전수칙 등)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실
험실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으로 종전의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은 폐기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